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747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상레이더의 운영·분석 기술 및 부품을 개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해 관측된 정보(이하 “기상레이더관측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상레이더관측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2. 기상레이더관측정보의 분석·재가공
3. 레이더를 운영하는 국내외 기관이 생산한 레이더 정보와 기상레이더관측정보의 통합·재가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기상레이더관측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국방부
3. 환경부
4. 국토교통부
5. 해양수산부
6. 그 밖에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2조제3항(중전의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제2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의 수신절차를 마련하

거나 제4항의 담당자”를 “제4항에 따른 수신 절차를 마련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담당자와 관리담당자”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2의2. 산업통상자원부

2의3. 환경부

제13조제1호 중 “제12호”를 “제11호”로, “전달하여야”를 “전달해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국제협력의 대상 등)”을 “(국제협력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협력대상”을 “국제협력의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세계기상기구 등 기상관련”을 “세계기상기구(WMO) 등 기상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제5호 중 “증명, 자료제공”을 “증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상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탐지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상레이더의 운영·분석 기술 및 부품을 개발하고,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해 관측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을 위하여 기상레이더관측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대상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